

##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

신청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	
	주민등록상 주소				우편번호:
	현 주소				우편번호:
	송달장소	(송달영수인: )			우편번호:
	전화번호(집·직장)		전화번호(휴대전화)		

대리인	성명				
	사무실 주소				우편번호:
	전화번호 (사무실)				
	이메일주소		팩스번호		

주채무자가(또는 보증채무자가, 연대채무자가, 배우자가) 이미 귀 법원에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.			
성명		사건번호	

### 신청취지

「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.」라는 결정을 구합니다.

### 신청이유

1. 신청인은,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, 수입 및 재산이 별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, 파산의 원인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(파산의 원인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).

신청인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,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(급여소득자의 경우).

신청인은 부동산임대소득·사업소득·농업소득·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,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(영업소득자의 경우).

2. 신청인은 각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변제가 곤란하므로, 그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. 즉 현시점에서 계획하고 있는 변제예정액은 \_\_\_\_\_개월간 월 \_\_\_\_\_원씩이고,

이 변제의 준비 및 절차비용지급의 준비를 위하여,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\_\_\_\_\_을 제1회로 하여, 이후 매월 \_\_\_\_\_에 개시결정 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에 동액의 금전을 입금하겠습니다.

3.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적립금을 반환받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는 \_\_\_\_\_은행 \_\_\_\_\_이며, 신청인의 계좌가 변경되거나 어떤 사유로든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청인은 사건담당 회생위원에게 즉시 변경된 예금계좌를 신청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겠습니다.

### 첨 부 서 류

1.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
2. 재산목록 1통
3.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
4. 진술서 1통
5. 수입인지 1통(30,000원)
6. 송달료납부서 1통(송달료 10회분 + (채권자 수 × 8회분))
7. 신청인 본인의 예금계좌 사본 1통(대리인의 예금계좌 사본 아님)
8. 위임장 1통(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)

####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

위 사건에 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, 폐지결정, 면책결정, 월 변제액 3개월분 연체의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.

■ 휴대전화번호:

신청인 채무자

(서명 또는 날인)

※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, 폐지결정, 면책결정이 있거나,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월 변제액 3개월분 이상 연체 시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.

※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 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(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).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, 이용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20 . . . . .

신청인

(서명 또는 날인)

법원 귀중

##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요령

### (1) 채무한도

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,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.

### (2) 관할법원

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(강릉지원)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 서울의 경우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 다만 주채무자와 보증인,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, 부부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
### (3) 신청인

신청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합니다. 특히 현주소는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확실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등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

### (4) 신청이유

-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여부를 신청이유 1항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.
- ② 변제계획안에 예정되어 있는 변제기간과 월변제예정액을 각 기재하고 신청일로부터 2개월 후의 일정한 날(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일, 영업소득자의 경우 매출채권 회수일 등)을 정하여 그 날을 제1회의 납입개시일과 매월 변제일로 기재합니다. 여기서 기재하는 금액은 변제계획인가시의 월변제예정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③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그 동안 적립된 금액을 반환받을 예금계좌를 기재합니다.
- ④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